

●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-32호

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을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제2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3월 29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1. 기간통신사업 허가취소 처분대상

허가번호	법인명	대표자	주 소
173	옥천광케이블네트워크(주)	이해중	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20-26
181	(주)장성삼계케이블	김외순	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938-5
182	구례케이블티브이시스템(주)	전영림	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1438-1
183	(주)담양케이블방송	박낙주	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30-1

2. 처분내용 :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취소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- 기간통신사업 허가 시 부과된 허가조건(전기통신사업법 제6조)과 사업의 시작의무(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)를 위반하였으며,
 -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(시정명령)에 따라 '1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기간통신사업을 개시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

4. 근거법령 :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2호, 제4호 및 제6호

5. 처분일자 : 2012. 3. 22.